#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청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95

발의연월일: 2020. 6. 9.

발 의 자:정청래·권인숙·이규민

이장섭 • 우원식 • 양이원영

김주영 · 김경만 · 김영주

주철현 · 이원욱 · 오영환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방송문화진흥회는 현행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지만 공적책임이 있는 MBC의 대주주로서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,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임원의 보수, 각종 수당과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.

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임원의 보수,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 개하도록 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의 신뢰성 및 예산 운용의 투명성 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이사·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)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- 1. 이사·임원의 보수 및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
- 2. 이사·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15조의2(이사·임원의 보수 등의
	공개)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
	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
	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	1. 이사·임원의 보수 및 각종
	수당의 수령 내역
	2. 이사·임원의 업무추진비 집
	<u>행 내역</u>
	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
	<u>는 사항</u>